

주주님께

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0년 3월 27일(금요일) 오전 09:30

2. 장 소 :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85 (남산동 당사 본사 3층 강당)

3. 회의 목적사항

가. 보고사항 : (1)감사보고 (2)영업보고 (3)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
(4)외부감사인 선임보고

나. 의결사항

제1호 의안 : 제11기(2019. 1. 1 ~ 2019.12.31)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등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※ 이익배당 예정내용 : 1주당 현금 250원
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【별첨 1】

제3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14조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
5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①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- ② 간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
6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우리회사의 본사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7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

우리회사는 「상법」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: 「<http://evote.ksd.or.kr>」
모바일 주소 : 「<http://evote.ksd.or.kr/m>」

나.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 수여기간: 2020년 3월 17일 ~ 2020년 3월 26일

-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
(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
다.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
-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: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,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·증권 범용 공인인증서

라.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.

*** 금번 주주총회에는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으니 이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.**

2020년 3월 일



대성에너지주식회사

대표이사 우 중 본 (직인생략)

대성에너지 정관 변경(안)

변 경 전	변 경 후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주 식</p> <p>제14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.</p> <p>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</p> <p>③ 이 회사는 <u>임시주주총회</u>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<u>이사회</u>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<u>이사회</u>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<u>있으며</u>, <u>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</u>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장 주주총회</p> <p>제18조(소집시기)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</p> <p>② 정기주주총회는 <u>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</u>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개 정 2020. 03. 27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주 식</p> <p>제14조(기준일) ① <삭 제></p> <p>② <삭 제></p> <p>③ 이 회사는 <u>주주총회</u>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<u>이사회</u>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<u>있다.</u>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장 주주총회</p> <p>제18조(소집시기) ① <좌 동></p> <p>② 정기주주총회는 <u>회사가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</u>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2020.03.27)</p> <p>① (시행일) 본 정관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-개정일자(주주총회) 명시</p> <p>-정기주주총회일 분산을 위한 기준일 규정 삭제</p>